

『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11월 22일

나. 발 의 자 : 박세진, 강승수, 김복자, 김재상
김태근, 정하영, 허 복 (7명)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1월 28일

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박 세 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청소년의 스마트폰·인터넷 의존 및 게임 중독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지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, 상담, 치료, 기술적 조치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,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청소년, 인터넷게임 중독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유해 정보로부터

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보호조치 및 기술적 보호 조치 (안 제5조 ~ 안 제6조)

-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경비 지원규모 및 방법을 규정함(안 제8조)
- 정보화 역기능 예방·해소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·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, 종합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위하여 법인·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 ~ 제10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청소년보호법」,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전기통신사업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- 본 『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』은
 - 「청소년보호법」과 「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」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·인터넷·게임중독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 유해정보 노출로 인한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·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·기술적 보호조치를 조례에 규정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자고 하는 것으로,
 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